

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
[시행 2008.3.4] [행정안전부령 제1호, 2008.3.4, 타법개정]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고시된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>

제3조 (지식정보자원의 지정신청) 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식정보자원 세부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4조 (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(이하 "표준화실무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지식정보자원 및 그 표준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08.3.4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표준화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

제5조 (표준화실무위원회의 운영) ①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준화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표준화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표준화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표준화실무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된 안건중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 개최전에 검토·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6조 (수당) 표준화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·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표준화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 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준화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08.3.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32> 까지 생략

<33>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·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